

세계인권선언서를 기저로 한 IFLA 선언서의 인권 개념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s of Human Rights in IFLA Statements on the Basis
of UDH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3. 연구의 제한

II. 이론적 배경

1. 인권의 정의
2. 비평 도서관학 운동
3. 선행연구

III. 세계인권선언서와 IFLA 선언서의 인권개념의 비교 분석

1. 세계인권선언서의 주요개념 분석
2. IFLA 선언서의 주요개념 분석

IV. 분석결과 및 제언

1. 분석결과
2. 제언

V. 결론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인권을 기저로 한 공공 도서관 서비스의 철학적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서와 국제도서관연맹의 인권과 관련된 13개의 선언서의 주요개념을 질적 데이터 분석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제도서관연맹의 선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권 개념은 1) 세계인권선언서 제 19조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접근의 자유, 2) 제 2조의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 12조의 사생활보호의 권리, 그리고 제 26조의 교육 받을 권리, 3) 제 18조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제 27조의 문화적 삶의 권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도서관법에 추가해야할 인권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서, 국제도서관연맹, 도서관 선언, 도서관 서비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인권은 민주사회를 떠받치는 절대적 기둥이다. 이것은 도서관의 중요한 가치인 지적 자유¹⁾와 서로 상하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뒤섞여 공존하게 됨으로써, 도서관은 이 두 가지 철학적 개념 즉, 인권 그리고 지적 자유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정보사회가 진화를 거듭할수록 개인의 기본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정보접근의 자유는 지적 자유의 필요충분조건이므로, 이것을 토대로 구축된 보편적이고 평등한 인권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barometer)가 되고 있다²⁾.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정보접근의 자유에 대한 지배세력의 간섭 또는 침해는 곧바로 정보의 불평등한 사회적 분배로 이어지며, 이 같은 불평등한 정보의 접근과 분배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정보 빈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³⁾의 사회적 고립화, 차별화, 그리고 소외화라는 악순환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이것은 사회적 소수자로 하여금 자신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 가치 그리고 권한 등을 스스로 판단하여 자신의 소신이나 행동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만인을 위한 공평한 민주사회로 성숙하는 것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공공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은 민주적 체제의 정부나 사회의 활동에 사회적 소수자가 스스로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인적 또는 물적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이들의 인간적 기본권, 즉 인권에 대한 자각심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의식을 토대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정의의 실현에 토양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정보근로자인 사서는 지식의 미로에서 길을 찾고 뚫는 개척자이며, 무지로 둘러싸인 어두운 숲속에서 오솔길을 찾아내는 길잡이이고, 또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유정신을 전승시키는 선도자이다⁴⁾.

그러나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실은 꼭 이렇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도서관과 사서는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해서 아무런 정당한 또는 합법적 근거 없이, 자신의 생각, 판단, 그리고 습관만으로 특정주제의 장서구축과 정보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거나, 봉쇄하고 있으며, 심지어 현수막과 포스터와 같은 게시물을 직접 훼손하거나 철거하고 있다. 사서의 이러한 인습적 검열은 비록 의도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기존의 교육과 실무를 통해 자신의 사고 속에 각인되어 있는 직업적 또는 윤리적 의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누가 사서에게 이러한 검열 권한을 부여하거나 위임했는가? 분명히 말해서, 사서의 이러한 행위는

1) ALA, *ALA Policy Manual, B.2.1 Library Bill of Rights*(2010), PDF, p.1.

<<http://www.ala.org/aboutala/governance/policymanual/updatedpolicymanual/section2/53intellfreedom#B.2.1>> [cited 2013.10.3]

2) Kathleen de la Pena McCook & Katharine J. Phenix, "Public Libraries and Human Rights," *Public Library Quarterly*, Vol.25, No.1-2(2006), p.58.

3) 이주민, 동성애자, 결인, 노숙인, 사상적 또는 정치적 이단자, 제3의 성 등을 말한다.

4) Oliver Harding, *Literary Censorship and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 Role Of The Librarian*, <<http://ezinearticles.com/?Literary-Censorship-And-Infringement-Of-Human-Rights---Role-Of-The-Librarian...>>[Cited 2013. 9. 12]

사서 스스로가 확실히 검열자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며, 이용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지적 자유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사서는 자신의 생각, 신념, 행위가 민주사회의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는 인권 중의 하나인 정보접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자기 스스로의 인습적 또는 윤리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검열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지적자유 원칙의 위반이란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서는 세상에 정말로 좋은 검열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특히 명심하여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도서관과 사서 모두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기본적 권리 즉, 인권이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해서 어디서 어떻게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지키기 위한 철학적 토대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철학적 근거로서 인권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국내 도서관법에서의 인권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서(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1948)와 국제도서관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이하 IFLA라 기술함) 및 그것의 FAIFE(Committee on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발표한 선언서, 결의문, 그리고 성명서(이하 IFLA 선언서로 기술함)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그것들의 주요개념을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원자료(raw text data)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그것의 주요 구조나 경험에 대한 이론이나 모델을 개발하는 질적 데이터분석의 귀납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⁵⁾. 또한 세계인권선언서의 조항별 주요개념과 본 연구에서 선정한 IFLA 선언서의 주요개념을 발췌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와 인권전공의 정치학 교수 1명, 총 2명이 본 연구의 코더(coders)로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한다.

- 1) 코더에 의해 세계인권선언서의 각 조항별 주요개념을 발췌한다.
- 2) IFLA의 인권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인권과 관련된 선언서를 수집하여, 조사대상 선언서를 선정한다.
- 3) 선정된 IFLA 선언서의 내용으로부터 주요개념을 발췌하여 귀납적으로 해석한다.
- 4) 세계인권선언서의 각 조항별 주요개념과 IFLA의 선언서의 주요개념을 비교 분석한다.
- 5) 분석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 도서관법의 도서관 서비스의 철학적 방향을 제안한다.

1.3 연구의 제한

본 연구에서는 IFLA의 선언서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IFLA의 World Report Series⁶⁾와 같은 보고서는 비록 인권 자료라 하더라도 회원국가 별로 도서관 서비스와 인권

5) David R. Thomas, *A general inductive approach for qualitative data analysis*,
<http://www.fmhs.auckland.ac.nz/soph/centres/hrmas/_docs/inductive2003.pdf> [cited 2013. 9.20]

에 관한 현황과 실태의 사실적 데이터이므로, 텍스트의 수사적 의미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방법은 조사대상 자료의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에 대한 코더의 주관적 판단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근본적인 단점을 갖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도서관법에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서윤리강령 등과 연관된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II. 이론적 배경

1. 인권의 정의

유엔에서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서가 채택된 날을 기념하여 12월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 또는 ‘국제인권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특히 국제연합 인권고등판무관실(UN OHCHR: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과 국제연합 인권이사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가 서로 협력하여 회원국의 인권 보호와 계몽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서(1948)의 제 1조에 인권의 정의가 잘 정의되어 있다⁷⁾. 여기서 인권이란 모든 인류의 천부적 존엄성과 연관된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그리고 평화의 기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연합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인권이란 “국적, 거주지, 성, 민족이나 종족, 피부색깔, 종교, 언어, 또는 그 밖의 자격(status)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권리이며, 우리 모두는 차별 없이 자신의 인권을 평등하게 누릴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권리”⁸⁾라 정의하면서, 인권의 4 대 원칙으로 보편성과 절대성의 원칙,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의 원칙,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⁹⁾.

이 이외에도 인권의 사전적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면, 인권이란 “사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절대적 기본 권리이며, 이 권리는 지역적, 지리적,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법에 자연적 또는 입법적 권리로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공공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초석으로 인식되어 온 권리”¹⁰⁾라는 것이다. 그 밖에도 인권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그것들의 기본적인 개념은 모두 다 위에서 살펴본 세계인권선언서의 정의와 대동소이하다.

결론적으로 인권이란 사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인공적 간섭 없이 갖게 되는 자유와 평등의 권리이며, 또한 민주적 가치의 옹호, 사회정의의 확립, 공공정책의 수립에 가장 먼저 숙려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국가와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 역시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과의

6) IFLA, *World Report Series*. <<http://www.ifla.org/faife/world-report>> [cited 2013.10.3]

7)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 속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 <<http://www.un.org/en/documents/udhr/>> [cited 2013. 10.3]

8)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http://www.ohchr.org/en/issues/Pages/WhatareHumanRights.aspx>> [cited 2013.10.3]

9)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bid.*

10) <<http://ko.wikipedia.org/wiki/%EC%9D%B8%EA%B6%8C>> [cited 2013.10.7]

무가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2. 비평 도서관학 운동

도서관 커뮤니티에서의 인권운동은 비평 도서관학 운동(Critical Librarianship Movement)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비평 도서관학 운동의 시작 동기는 과거부터 원주민, 여성, 구술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호감도가 가장 떨어지는 정치적 급진주의자와 같은 등외집단(marginalized populations)에 대하여, 사서와 같은 문화 근로자들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급진적이고 낯 설은 이질적 사회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또는 거부감을 가짐으로써 자신들의 고유한 공공의 정책과 업무를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진보 사서들(progressive librarians)의 사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¹¹⁾.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도서관과 사서의 주된 사고로 정착되어있는 도서관 서비스의 편향성을 바로 잡기 위하여, 진보 사서에 의해 시작된 비평 도서관 운동은 1930년대 미국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이후로는 비록 발전 속도가 느리지만 확실하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그 결과로 1983년¹²⁾과 1989년¹³⁾에 IFLA에서 인권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1990년에 미국에서 Progressive Librarians Guild(PLG)라는 단체에서 「The Progressive Librarian」이란 학술지를 발간하면서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게 되었으며, 그 후로 미국, 영국, 스웨덴,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등에서 비평 도서관학(Critical Librarianship)¹⁴⁾이란 이름을 사용한 전문단체가 구성되었다¹⁵⁾.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은 2004년 IFLA 선언서¹⁶⁾인데, 여기서 정보, 지식, 문서관, 도서관 등은 공공의 문화적 재화이면서 동시에 귀중한 자원들이며, 이것들은 민주적 가치, 예를 들어 자유, 평등, 사회정의, 관용, 존경, 공평, 단결, 공동체, 사회, 그리고 개인의 존엄을 근거로 발전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 선언서의 결실로 제 3세계의 진보사서를 중심으로 비평 도서관학과 관련된 국제적 네트워크¹⁷⁾가 구축되었으며, 이 네트워크에는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독일, 멕시코, 남아프리카, 스웨덴, 영국, 미국, 캐나다와 같은 나라가 참가하였다.

이 운동의 특징은 인권을 토대로 민주적 가치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설득과 의견일치를 강조하면서, 다른 전문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것 이상으로 인간의 조건과 인권의 발전에 초점을 맞춘 도서관 근로자의 국제적 운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의 정신은 지적 자유의 정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의 최상위 개념인 인권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으로써¹⁸⁾. 21세기 이전에는 거의 없었던 새로운 기

11) Toni Samek(a), *Critical Librarianship: an interview with Toni Samek*,
<<http://bclaifc.wordpress.com/2007/11/13/critical-librarianship-an-interview-with-toni-samek/>>
[cited 2013.10.7]

12) Resolution on Behalf of Librarians Who Are Victims of Violation of Human Right.

13) Resolu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Censorship and Libraries.

14) 북미에서는 progressive librarianship, activist librarianship, socially responsible librarianship, radical librarianship으로 부르기도 한다.

15) Progressive Librarians's International Coalition

16) Manifesto Declaration from Buenos Aires on Information, Documentation and Libraries.

17) Tomi Samek(b), *Librarianship and Human Rights: A twenty-first century guide*(Oxford: Chandos, c2007), p.13.

회와 계기를 도서관과 사서에게 제공하고 있다.

3. 선행연구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 연관된 국내문헌정보학자의 인권연구는 아직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 연구자를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맥쿡과 피닉스(Kathleen de la Pena McCook & Katharine J. Phenix)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와 인권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자유로운 권리, 그리고 안전할 권리를 지향하는 세계인권선언서의 보편적 권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관심과 존경을 받아야 하며, 평등하고 자치적이며, 도덕적인 사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정의한다. 바로 이 개념이 공공도서관 사서가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서비스의 기본적 가치이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서와 같은 국제적 규범이나 지침을 도서관 서비스의 정책 수립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⁹⁾.

바이런(Alex Byrne)은 정보접근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기본적인 인권이며, 이것은 자유, 평화, 빈곤퇴치, 민주주의에 관한 공익적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도서관의 임무에 매우 중요한 표식이므로, 도서관이 바로 인권의 산실이라고 주장하였다²⁰⁾.

새멕(T. Samek)은 세계인권선언서의 30개 조항을 7개의 권리군(families of rights)으로 나누는 다음에, 이들 7개의 권리군 중에서 특히 공공도서관 서비스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권리군은 4개의 권리군 -안전권리, 자유권리, 평등권리, 복지권리 - 이며, 이들 4개의 권리군에서 표현하고 있는 개념은 현대 도서관의 핵심적 가치인 정보접근, 기밀유지/사생활보호, 민주주의, 다양성, 교육 및 평생학습, 지적 자유, 보존, 공공의 이익, 전문직,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겹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근거는 인간의 존엄과 표현의 자유를 정의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서의 제19조²¹⁾라고 주장하였다.²²⁾

에라만(Mustafa Yunus Eryaman)은 변형하는 도서관(transformative library)에서 사서의 제1차적 역할과 책임은 자신의 업무의 핵심요소를 다루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서란 지적 자유를 촉진시키고 검열과 맞설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 지위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며,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품위 있고, 용기 있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고, 또한 읽고, 듣고, 볼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지지입장을 밝혀야 하며, 관련 캠페인을 벌여야 하지만, 때때로 민주주의의 원칙 즉, 세계인권선언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활동이 정부나 지배세력에 도전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18) Toni Samek(c), "Internet AND Intention: An Infrastructure for Progressive Libraria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Ethics*, Vol.2(2004.11). p.11.

<http://www.i-r-i-e.net/inhalt/002/ijie_002_23_samek.pdf> [2013.107]

19) Kathleen de la Pena McCook & Katharine J. Phenix, *op. cit.* p.63.

20) Alex Byrne, *Libraries and Democracies, Keynote Paper for Seminar on Libraries and Democracy, Stockholm, 4, 1999*, <<http://archive.ifla.org/faife/papers/others/byrne3.htm>> [cited 2013. 10.3]

21)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에는 간섭없이 소신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떠한 미디어나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나눌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http://www.un.org/en/documents/udhr/>> [cited 2013. 10.3]

22) Toni Samek(d), "Ethical Reflection on 21st Century Information Work: An Address to Teachers and Librarians," *Progressive Librarian*, Vol. 25, p. 49.

주장하고 있다²³⁾.

피닉스와 맥쿡(Katharine J. Phenix and De la Pena McCook)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로서 우리의 역사가 인권옹호자였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개방되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서비스, 자료, 그리고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도록 하는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⁴⁾.

하딩(Oliver Harding)은 세계인권선언서의 제 19조는 1948년에 만들어진 독립적이면서 편파적이지 않은 중요한 인권법이며,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촉진시키기 위해 검열과 맞서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 종교, 외설,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객관적이라고 평가된 자료의 생산, 분배, 보급 또는 판매의 금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인권의 존경을 전 세계적으로 강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선언서인 세계인권선언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⁵⁾.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문헌정보학에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정치학이나 사회학과 같은 지식을 다루는 여러 다른 학문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으며, 특히 진보적 문헌정보학 연구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요한 인권연구의 주제는 주로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자유이며, 이 외에도 사회정의, 정보윤리, 중립성, 검열, 그리고 빈곤 등과 같은 주제를 대상으로 인권과 도서관 서비스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세계인권선언서와 IFLA 선언서의 인권개념의 비교분석

앞에서 언급한 연구방법의 절차에 따라, 이 글에서는 먼저 코더와 함께 세계인권선언서의 30개 조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요개념(key concepts)을 발췌하여,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IFLA의 선언서에 어떤 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3.1 세계인권선언서의 주요개념 분석

세계인권선언서의 각 조항별 주요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본 연구의 코더에 의해 이것들 중 몇 가지 자료를 참고²⁶⁾²⁷⁾하여, 세계인권선언서의 텍스트

23) Mustafa Yunus Eryaman, "The Public Library as a Space for Democratic Empowerment: Henry Giroux, Radical Democracy, and Border Pedagogy," in *Critical theo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ploring the Social from across the Disciplines*, eds. G.J. Leckie, L.M. Given, and J.E. Buschman(Santa Barbara, Libraries Unlimited, c.2010), pp.131-141.

24) Katharine J. Phenix and Kathleen de la Pena McCook, "A Commitment to Human Rights-Let's Honor the Qualities Required of a Librarian Dedicated to Human Rights," *Information for Social Change*, Vol. 25(2006)
<<http://www.libr.org/isc/issues/ISC25/articles/A%20COMMITMENT%20TO%20HUMAN%20RIGHTS.pdf>> [2010.10.7.]

25) Oliver Harding, *op. cit.*

26)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http://udhr60.humanrights.go.kr/02_sub/body01.jsp> [cited 2013.10.7.]

27)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Simplified Version of the UDHR*,
<http://www.hrea.org/index.php?doc_id=1> [cited 2013.10.7.]

를 분석하여 다음의 <표 1>과 같은 각 조항별 주요개념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표 1> 세계인권선언서의 각 조항별 주요개념

조번호	주요개념	조번호	주요개념
1	천부적 자유/존엄/평등/형제애	16	혼인/가족보호
2	차별금지	17	사유 및 공유 재산
3	생명/자유/안전	18	사상/양심/종교
4	노예 및 예속 금지	19	의사표현/정보접근
5	고문 및 잔혹형벌 금지	20	집회/결사
6	법률적 인간성 보호	21	대의정치/공공서비스의 평등
7	법률적 평등	22	사회보장
8	법률적 구제	23	직업/임금/노동조합
9	불법구금 및 추방 금지	24	휴식/여가
10	공평한 재판	25	건강과 행복한 생활/환경
11	무죄추정	26	교육
12	사생활	27	문화적 삶/예술/학문적 혜택
13	거주/이동	28	UDHR의 권리와 자유의 이행
14	망명	29	공동체의 의무/타인의 권리 존중
15	국적	30	UDHR의 권리 훼손 금지

3.2 IFLA 선언서의 주요개념 분석

전 세계의 도서관을 대표하여, IFLA는 FAIFE(Free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Committee)를 통해 인권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전 세계 도서관계의 지적 자유 상태를 모니터하고 있으며, 지적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위협하는 세계화 세력에 맞서고 있는 유일한 국제기관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에 다양한 주제로 발표된 IFLA의 선언서를 조사하여 그 텍스트가 본 연구의 주제와 일치하는 13개의 선언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것들의 시대 순 리스트는 <부록>과 같다.

이들 선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keywords)나 키프레이즈(keyphrases)를 발췌하여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개념을 분석한 다음에, 세계인권선언서의 각 조항별 주요개념과 상호 비교하여 그 결과를 귀납적으로 추론한다.

가. Resolution on Behalf of Librarians Who Are Victims of Violation of Human Right, 1983²⁸⁾

이 발표문은 1983년에 IFLA가 인권 이슈의 참여에 대한 적합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의문이며, 그 내용 중에 “인권의 이름으로 맹세코, 사서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의 직업으로서 자신의 소신으로 박해를 받는 동료사서와 연대의식을 갖는다” 라는 표현은 사서가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있어서 권력 및 사정 기관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면, 전 세계의 동료사서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이들과 연대하여 저항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 결의문에서는 사서가 지적 자유와 같은 도서관의 핵심적 가치를 옹호하는 데 위협이 따르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IFLA는 이러한 위기에

28) FAIFE Policy papers 1983-1997, <<http://www.ifla.org/publications/faife-policy-papers-1983-1997>> [cited 2013.10.7]

처한 사서를 대신하여 이들의 구제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개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에서 발췌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추론해 보면, 이 선언서는 사서가 자신의 업무나 그것과 관련된 사고나 소신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세계인권선언서의 18조와 19조를 근거로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인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고, 세계인권선언서의 1조와 8조에서 정의한 것처럼 모든 사서가 형제애로 단결하여 공동으로 대항하여야 하며, IFLA를 통해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 Resolu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Censorship and Libraries. 1989²⁹⁾

이 결의안은 인권위반 희생자인 사서와의 연대책임을 갖는다는 1983년 결의문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결의문에서 전 세계의 모든 사서와 도서관협회는 세계인권선언서 19조의 이행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사서는 정보접근의 자유로운 권리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검열의 시도에 대하여 항상 개어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검열에 대항하여 이루어지는 “국가적 소구권(national recourse)”을 통해 적시에 적절한 그리고 만족스러운 법률적 결과를 얻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 구제의 권리를 누리기가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결의문에서는 세계인권선언서 19조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사상적 고정관념이 사서의 업무에 영향을 끼쳐서 사서 스스로가 검열을 하는 비정상적인 일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 결의안의 이러한 텍스트는 표현의 자유와 그것의 배타적 개념인 검열에 대해 모든 도서관과 사서에게 세계인권선언서 19조의 권리를 강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검열이 이루어질 때 세계인권선언서 8조의 법률적 구제의 권리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사서 또한 세계인권선언서 18조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핑계로 업무상의 자발적인 검열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 Public Library Manifesto, 1994³⁰⁾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성명서에서 “기본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자유, 번영, 발전은 기본적인 인간적 가치이며, 민주적 권리와 건설적인 참여,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은 시민 스스로 아무런 제한 없이 지식, 사고, 문화로의 자유롭고 무제한적인 정보접근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이것은 시민교육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공 도서관의 장서와 서비스는 “연령,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언어, 지위 등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누구나(특정언어사용자, 장애인, 환자, 죄수 포함)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는 자료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성명서는 공공도서관은 민주 사회와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역할의 철학적 근거는 세계인권선언서의 2조, 19조, 그리고 26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권리, 즉 차별금지, 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교육 받을 권리라는 것과 민주적 권리의 보호와 시민 교육의 개발의 중심에 바로 공공도서관이 있다는 선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29) FAIFE Policy papers 1983-1997, Ibid.

30) FAIFE Policy papers 1983-1997, Ibid.

라.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 1999³¹⁾

도서관과 지적 자유의 관계를 밝힌 이 선언서에서 “인간은 지식, 창조적 사고, 그리고 지적 활동의 표현에 접근할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도서관에서 지적 자유를 옹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4가지 원칙을 선언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 창조적 사고, 그리고 지적 활동의 표현과 접근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며, 알 권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둘째,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정보접근의 자유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셋째, 사서의 중요한 책임은 지적 자유에 대한 의무이다.

넷째, 도서관과 사서는 지적 자유, 정보접근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원칙을 고수하고, 동시에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의 실현을 위한 지침으로, 먼저 도서관은 “지식, 사고 그리고 문화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도서관 자료와 서비스의 선택과 이용이 “정치적,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견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업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서 또한 “어떠한 유형의 검열에도 반대”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신분과 그들이 이용한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 3자에게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경영자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의 텍스트를 근거로 이 선언서의 주요개념을 추론해 보면, 도서관에서 지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세계인권선언서 19조라는 것과 사서 역시 이 조항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서의 12조와 18조에서 정의한 사생활보호와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지적 자유와 관련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 Glasgow Declaration on Libraries, Information Services and Intellectual Freedom, 2002³²⁾

이 선언서의 중요한 주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한 없는 정보의 접근과 표현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는 세계인권선언서의 19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이고, 또 하나는 “지적 자유에는 풍요로운 인간의 지식, 의견, 창조적 사고 그리고 지적 활동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서관은 정보 접근의 자유와 관련해서 “국경과 상관 없이 어떠한 매체로든 정보, 아이디어 그리고 상상의 저작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사서는 “어떠한 검열도 반대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도서관과 사서는 “사회의 복수성과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도서관 자료와 서비스의 선택과 이용이 정치적,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견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업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이용의 평등권과 관련해서는 모든 도서관 이용자는 누구나 그것의 자료, 시설,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 받지 않아야 하고, 또한 “이용자의 사생활 및 비밀보장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31) <<http://www.ifla.org/publications/ifla-statement-on-libraries-and-intellectual-freedom>> [cited 2013.10.7]

32) <<http://www.ifla.org/publications/the-glasgow-declaration-on-libraries-information-services-and-intellectual-freedom>> [cited 2013.10.7]

결론적으로 이 선언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의 내용을 확대하고 강화시킨 선언서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1999년 선언서에서 기술한 세계인권선언서의 12조, 18조, 그리고 19조에서 정의한 사생활보호, 양심의 자유, 그리고 정보접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이전보다 더욱 명확하고도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과 1999년 선언서와의 차이는 세계인권선언서 2조의 차별금지 권리를 추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바. Internet Manifesto, 2002³³⁾

이 성명서는 방해받지 않는 정보 접근은 전 세계의 자유, 평등, 화합과 평화에 필수적 요소라고 전제한 다음에, 지적 자유란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정보를 찾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 두 가지 권리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도서관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밝히면서, 도서관에서 “방해받지 않는 인터넷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커뮤니티와 개인의 자유, 번영 그리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도서관의 책임이며, 또한 “양질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개방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장려시킬 책임”도 도서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보흐름의 방해요소인 “불평등, 빈곤, 그리고 절망의 원인들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한 “정보접근자유 원칙(Principles of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via the Internet)”은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서, 특히 19조를 따라야 하며,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인터넷은 이 권리를 누구나 누리도록 하는 매체이므로, 인터넷의 접근이 “어떤 형태의 사상적, 정치적, 또는 종교적 검열에, 또는 경제적 장애로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텍스트를 근거로, 이 성명서는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 서비스 역시 세계인권선언서의 19조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며, 인터넷의 사용에 있어서 세계인권선언서의 2조에서 언급한 정의처럼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이 발생치 않아야 하고, 끝으로 인터넷의 접근과 사용이 세계인권선언서 25조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절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사. Statement on Librar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002³⁴⁾

앞에서 살펴본 기존의 선언서와 달리, 이 선언서에서는 도서관과 환경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 선언서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복지에 필요한 좋은 환경을 가질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며, 도서관은 “이것에 관한 정보 접근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은 지적 자유, 민주적 가치, 그리고 보편적인 시민권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서관의 중요한 책임은 첫째,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용자의 신분, 자의적 선택, 의사결정 및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하고, 둘째, “사회의 복수성과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우리 환경의 풍요로움을 반영하는 다양한 자료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집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셋째, “점점 더 벌어지는 정보와 디지털 격차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막는데 다양한 형태로 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넷째, “도서관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구

33) <<http://www.ifla.org/publications/the-ifla-internet-manifesto>> [cited 2013.10.7]

34) <<http://www.ifla.org/publications/statement-on-libraries-and-sustainable-development>> [cited 2013.10.7]

와 혁신의 정보가 전 세계 사람들의 복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이용”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서관은 세계인권선언서의 25조와 19조에서 정의한 것처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관한 정보 접근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중요한 의무와 책임은 모든 사람의 웰빙, 복지, 건강, 문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계인권선언서 2조의 차별금지, 12조의 사생활보호, 26조의 교육, 그리고 27조의 문화적 삶에 맞춰야 한다는 선언서라고 추론할 수 있다.

아. Resolution on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2003³⁵⁾

이 결의문의 섹션 중에서 특히 인권과 관련된 「5.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은 도서관과 국가안보간의 관계에 관한 선언으로 미국의 애국자법(US Patriot Act)과 전 세계의 어디에선가 제정되고 있는 비슷한 입법에 대한 위험성 특히, “테러와의 전쟁이란 이름으로 정부 정보의 접근을 제한” 하고, “개인정보의 무차별적 접근”을 가능케 하는 시류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이것에서는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더라도, “세계인권선언서 특히, 제 19조에 조인한 모든 국가는 도서관, 사서,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시민적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란 이름으로 권력기관에 의해 아무런 제재 없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정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생활보호의 기본적 인권을 위반하는 많은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인권의 보호를 위해 그 같은 모든 입법의 철회 또는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를 근거로, 이 결의문의 주요개념을 추론해 보면, 도서관과 사서는 국가안보법이 기본적으로 세계인권선언서 19조를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하며, 또한 이런 입법을 근거로 정부나 사정기관이 이용자의 정보접근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기록을 아무런 제재 없이 접근하여 열람하게 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이들의 행위를 막기 위한 정치적 참여와 관련해서 세계인권선언서 2조의 차별금지, 12조의 사생활보호, 18조의 사상의 자유, 그리고 21조의 대의정치를 근거로 저항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 Declaration from Buenos Aires on Information, Documentation and Libraries, 2004³⁶⁾

이것은 최초로 남미에서 발표된 선언서이며, 제 3 세계의 사서에 의해 주도적으로 채택됨으로써 기존의 다른 선언서와 달리 도서관과 사서의 사회적 및 정치적 책임과 활동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선언서이다.

이것의 전문 속에서 “도서관은 인류공동의 문화재이며, 그것의 발전은 자유, 평등, 사회 정의, 관용, 그리고 개인의 존엄 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선언한 다음에, 도서관은 “모든 사람의 자결권과 자주권을 보장하는 인권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장소”이므로, 인류평등적인 지식과 정보 접근의 원칙에 따라, 소수계층과 사회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금지하여야 하고, 사서는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 주창자, 교육 조정자, 그리고 사회적 및 정치적 절차의 행동가”이므로 이들의 중요한

35) <<http://www.ifla.org/publications/ifla-council-resolution-on-national-security-legislation>>
[cited 2013.10.7]

36) <<http://justicelibraries.blogspot.kr/2006/02/declaration-from-buenos-aires-on.html>>
[cited 2013.10.7]

사회적 의무는 “인류와 문화유산을 유린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에 반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이 선언서에서 도서관과 사서는 우리 지구의 심각한 생태적 파괴와 같은 환경 및 공해 문제와 그것에 관한 정보의 개발, 조직, 배포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과 사서에겐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한 급료를 지불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서비스와 관련해서 많은 세계인권선언서 조문의 정의를 그것의 철학적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다른 선언서에서는 간접적으로 또는 수사적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서 1조인 모든 사람의 자주적이고 평등한 인간적 권리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인권의 도움장소인 도서관의 역할에 대하여 세계인권선언서 2조, 18조, 그리고 19조에 기초하여 정의하고 있고, 사서의 정의와 역할 역시 세계인권선언서 19조, 21조, 25조, 그리고 26조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세계인권선언서 23조를 근거로 사서의 정당한 급료의 지불에 관한 선언은 앞에서 살펴본 기존의 다른 선언서에서는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선언서는 제 3세계의 사서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됨으로써, 인권, 민주주의, 사회정의, 문맹 및 빈곤퇴치, 환경보호, 그리고 세계화와 같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사안에 대한 도서관과 사서의 적극적 참여와 행동에 대한 필요성을 선언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차. IFLA Position on Internet Governance, 2005³⁷⁾

인터넷과 디지털 자료의 총괄(governance)에 대한 IFLA의 입장을 밝힌 성명서이다. 이 성명서에서, IFLA는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에서 인증한 국제조직이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의 모든 도서관들의 대표이므로, “도서관의 정보 서비스와 관련해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자원들이 아주 중요한 토양이 되는 디지털 시대에, 미래의 인터넷 총괄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상업적인 또는 정부나 분파적인 이익을 위해 정보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 하고, 인터넷의 신뢰성에 중요한 운영체제의 보증, 스팸의 통제, 그리고 지적 자유의 보호를 지지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조치들이 세계인권선언서, 특히 제 19조에서 언급한 권리들을 침해하지 말 것” 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의 정보접근에 있어서, IFLA는 “누구나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선택하여 제약 없이 정보에 접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다중언어(multilingual) 시스템” 으로 인터넷이 발전하는 것을 지지하며, 미래의 인터넷 총괄을 위한 방법으로 정부, 시민사회,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체의 설립을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위에서 발췌한 텍스트를 근거로 이 선언서의 주장을 추론해 보면, IFLA는 도서관 중심의 인터넷 및 디지털 자료의 접근과 관리를 강조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세계인권선언서 19조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세계인권선언서 12조의 사생활 보호 또한 보장되어야 하며, 세계인권선언서 2조를 근거로 누구나 자신들만의 고유 언어로도 인터넷에 접근하여 사용하는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카. Beacons of the Information Society - The Alexandria Proclamation on Information

37) <<http://www.ifla.org/publications/ifla-position-on-internet-governance>> [cited 2013.10.7]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 2005³⁸⁾

이 성명서에서 “정보해득력(情報解得力)과 평생학습은 정보사회의 햇불”이며, 정보해득력은 “평생학습의 핵심인 동시에 디지털 세상에서 하나 뿐인 기본적 인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보해득력이란 “정보요구를 인지하고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서 정보를 창조하고, 응용하고, 평가하고, 소재지를 찾아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능력은 “개인, 기업(특히 중소기업), 지역, 국가의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중요하며, 경제적 발전, 교육, 보건, 인적 서비스, 그리고 현 사회에서의 모든 기타 요소를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로의 효과적인 접근, 사용, 창조에 필요한 열쇠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정부와 국제기관에게 정보해득력과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 또는 약자, 특히 여성, 이민자, 일용직 근로자, 실업자 등의 능력을 증대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텍스트를 근거로, 이 선언서는 오늘날 정보사회 환경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UDHR의 26조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의 절대적 필요성과 세계인권선언서 19조와 동일한 인권적 가치를 갖는 정보해득력, 그리고 이러한 권리들과 함께 세계인권선언서 25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기관이 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타. Alexandria Manifesto on Libraries, the Information Society in Action, 2005³⁹⁾

이것은 바로 위의 「Beacons of the Information Society - The Alexandria Proclamation on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과 동일한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서이다. 여기서 도서관은 “어떠한 매체나 국경에 상관없이, 상상의 저작, 아이디어, 그리고 정보의 접근을 제공하여 지적 자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어떤 형태의 검열도 반대하여 공평하고도 보편적인 시민적 권리와 민주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지원하고 도와야 하며, 특히 도서관의 독특한 역할이 “개인의 특별한 질문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통해 “기존의 미디어에 의해 전달되는 지식을 보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정보사회에 크게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선언서에서 도서관의 평생학습 및 정보해득력 프로그램은 “교양 시민과 투명한 통치”뿐만 아니라 “전자정부의 발전”에도 필수적인 것이며, ICT를 활용한 정보자원의 효율적 이용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 및 정보 불평등의 해소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도서관은 만인을 위한 정보사회를 위해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정보를 표현할 수 있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갖고서 모든 사람이 정보와 지식의 창조, 접근, 이용,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포괄적(inclusive)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결의하고 있다.

이 선언서에서 제시한 도서관의 역할을 추론해 보면, 도서관은 세계인권선언서 19조에서 정의한 정보접근의 자유를 근거로 정보사회에서 지적 자유, 공평한 시민권리 그리고 민주적 가치의 보호에 앞장 서야 하며, 또한 정보해득력의 향상을 통한 정보격차의 해소를 목표로 디지털 정보의 이용 교육을 세계인권선언서 26조를 근거로 실시함으로써 인권이 보장되는

38) <<http://www.ifla.org/publications/beacons-of-the-information-society-the-alexandria-proclamation-on-information-literacy>> [cited 2013.10.7]

39) <<http://www.ifla.org/publications/alexandria-manifesto-on-libraries-the-information-society-in-action>> [2013.10.7.]

정보사회의 구축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파. Statement on Access to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n Historical Records, 2008⁴⁰⁾

이것은 사료(史料)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접근과 보호에 관한 선언서이다. 여기서는 정보 접근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현재의 사건 기록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록물인 “인구통계 데이터, 출생, 사망, 그리고 결혼 증명서, 군복무 기록, 연금기록, 유언과 유언장,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등과 같은 개인신상정보(pii: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의 원자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신상정보와 사생활보호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선언서에서 사서는 “정부가 역사적 데이터를 감추려는 의도로 이루어지는 기록물의 파괴에 반대”하여야 하지만, 그것의 내용이 “실존 인물을 해롭게 할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안에 그 내용이 공개”되도록 해야 하고, 또한 “이용자의 독서와 연구 습관을 모니터링 하려는 정부기관의 잘못된 의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생활보호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지지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신원도용(identity theft)과 테러리즘을 이유로 일종의 검열인 사생활 통제법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선언서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사생활 보호, 사업의 기밀, 그리고 정부정보의 보안이라는 당위성을 갖고 제정되는 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위개념인 공익(a higher public good)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발췌한 텍스트를 근거로 이 선언서의 핵심개념을 추론해 보면, 개인의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현대사뿐만 아니라 과거사 자료는 세계인권선언서 19조에 근거한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사서 역시도 세계인권선언서 19조와 더불어 12조의 정의에 따라 신원도용이나 테러리즘을 핑계로 신상정보자료를 폐기하거나 악용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맞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인물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사생활보호 및 정부정보의 보안 등과 같은 명목으로 만들어지는 소위 착한 법이라 하더라도 세계인권선언서 12조와 19조 뿐만 아니라 3조에서 밝히고 있는 우리 모두의 생명, 자유, 안전과 같은 고차원적인 공익적 개념을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IV. 분석결과 및 제언

1. 분석결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13개의 IFLA 선언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추론한 인권의 개념을 세계인권선언서의 조항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IFLA 선언서에 나타난 세계인권선언서 조항별 인권

40) <<http://www.ifla.org/publications/ifla-statement-on-access-to-personally-identifiable-information-in-historical-records>> [2013.10.7.]

개념

연도	UDHR조항													계
	1	2	3	8	12	18	19	20	21	23	25	26	27	
가. 1983	0	-	-	0	-	-	0	0	-	-	-	-	-	4
나. 1989	-	-	-	0	-	0	0	-	-	-	-	-	-	3
다. 1994	-	0	-	-	-	-	0	-	-	-	-	0	-	3
라. 1999	-	-	-	-	0	0	0	-	-	-	-	-	-	3
마. 2002	-	0	-	-	0	0	0	-	-	-	-	-	-	4
바. 2002	-	0	-	-	-	-	0	-	-	-	0	-	-	3
사. 2002	-	0	-	-	0	-	0	-	-	-	0	0	0	6
아. 2003	-	0	-	-	0	0	0	-	0	-	-	-	-	5
자. 2004	0	0	-	-	-	0	0	-	0	0	0	0	-	8
차. 2005	-	-	-	-	0	-	0	-	-	-	-	-	-	2
차. 2005	-	-	-	-	-	-	0	-	-	-	0	0	-	3
카. 2005	-	-	-	-	-	-	0	-	-	-	-	0	-	2
타. 2008	-	0	0	-	0	-	0	-	-	-	-	-	-	4
계	2	7	1	2	6	4	13	1	2	1	4	5	2	50

위의 <표 2>에서처럼 조사대상 IFLA 선언서에 포함되어 있는 인권 개념은 세계인권선언서의 총 30개 조항 중에서 13개이며, 이들 조항을 살펴보면, 1조, 2조, 3조, 8조, 12조, 18조, 19조, 20조, 21조, 23조, 25조, 26조, 그리고 27조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IFLA 선언서에서 세계인권선언서의 어떤 조항의 주요개념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의 <표 2>에 나타나 있는 각 조항별 적용빈도의 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세계인권선언서 조항의 주요개념 적용빈도 분석

순 위	UDHR 조항 번호	주요개념 적용빈도 수(n)	%(n/13)	비 고
1	19	13	100.00	
2	2	7	53.84	
3	12	6	46.15	
4	26	5	38.46	
5	18	4	30.76	조항별
	25			
6	1	2	15.38	조항별
	8			
	21			
	27			
7	3	1	7.67	조항별
	20			
	23			

위의 <표 3>을 살펴보면, IFLA의 선언서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인권 개념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세계인권선언서 19조의 의견/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접근의 자유에 대한 권리로, 조사대상 선언서 모두에 포함되어 있다.

둘째, 세계인권선언서 2조의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약 54%에,

셋째, 세계인권선언서 12조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권리로 약 46%에,

넷째, 세계인권선언서 26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로 약 38%에, .

다섯째, 세계인권선언서 18조의 사상/양심/종교에 대한 자유,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서 25조의 건강/복지/환경에 관한 권리로 각각 약 31%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조항 이외에도 IFLA의 선언서에서는 세계인권선언서 1조(존엄/평등 권리), 8조(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 21조(참정의 권리), 그리고 27조(문화적 권리)가 각각 약 15%에,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서 3조(생명/자유/안전에 관한 권리), 20조(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23조(직업에 관한 권리)가 각각 약 8%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로 위의 <표 2>에 분포되어 있는 세계인권선언서 조항의 시대 순 분포도를 살펴보면,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세계인권선언서 25조의 웰빙/건강/복지/환경에 관한 권리와 26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IFLA의 관심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이 환경보존과 웰빙, 그리고 정보격차해소와 빈곤퇴치의 평생학습을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인간으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삶의 권리를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비교분석을 토대로, 세계인권선언서의 주요개념을 기저로 한 IFLA의 선언서의 인권 개념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세계인권선언서의 인권 개념은 의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자유이며, 이것이 바로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핵심 개념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은 차별금지의 권리, 사생활보호의 권리, 그리고 교육의 권리이며, 세 번째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건강/복지/환경의 권리이다. 그 밖에도 인간 존엄 및 평등의 권리, 법률적 구제의 권리, 문화적 권리, 대의정치의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직업의 권리 또한 도서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인권개념이다. 특히,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권 개념은 들어서 교육의 권리와 더불어 웰빙/환경의 권리이다.

2. 제언

정보사회의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망라적 주체의 장서 구축, 차별 없는 정보 접근, 그리고 사생활의 보호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모든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민주적 근간이 되는 핵심적 가치이며, 이미 세계인권선언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 가치이다. 또한 21세기에 들어와서 교육과 웰빙/환경에 대한 인권도 우리 모두의 중요한 기본적 가치로 그 인식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 개념들은 도서관 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사서와 이용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도서관법에서도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의 보장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을 통해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⁴¹⁾하는 것이며,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⁴²⁾해야 하고, “정보 및 문화, 그리고 교육센터의 기능”⁴³⁾

41) 도서관법 제 1조(목적)

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도서관의 책무로 장애인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에게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4)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에 나타나 있는 이 개념들은 IFLA의 선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서의 19조와 12조, 2조, 그리고 25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법의 조문 어디에서도 인간의 기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적 가치에 대한 분명한 텍스트를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이 법이 2012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들어와서 IFLA가 인권과 관련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웰빙/환경의 권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추가로 IFLA가 강조하고 있는 인권 지킴이로서의 도서관과 사서의 진보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텍스트도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철학적 편협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권을 기저로 한 도서관 서비스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도서관법에 다음과 같은 철학적 개념이 수사적으로(rhetorical)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게 된다면,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은 인권을 중시하는 문명국가의 중추적인 국가기관이 될 것이다.

- 1) 「세계인권선언서」, 특히 제 19조의 확고한 지지
- 2) 도서관의 민주적 가치의 옹호
- 3) 도서관의 정치적 그리고 사상적 균형
- 4) 빈곤퇴치 및 환경 보호

V. 결론

21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IFLA에서 주장했듯이, 특히 공공도서관은 인권센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사서는 인권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서관과 사서는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해서 인권을 그것의 기저로 삼는 것에 대하여 매우 어색하거나 낯설어하고 있다. 아마도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 우리 모두가 학교 교육과 현장 업무를 통해 경험한 전문용어가 주로 관리적이고 기술적인 것들이어서, 인권과 같은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거나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렇다하더라도 지금은 인권, 정보접근의 자유, 그리고 민주적 가치 등과 같은 수사를 통해 우리의 철학적 지평을 넓혀갈 시점이며, 이것의 시작은 바로 도서관법에서부터 도서관장서의 구축과 정보 서비스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세계인권선언서와 IFLA의 인권 개념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행동하는 용기 있는 자세의 사서와 이들이 인권 위반과 맞서 싸울 경우에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법률적 어려움, 심지어 직장이나 상사의 강압적 위협으로부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법률적 그리고 사회적 제도에 대한 공론이다.

끝으로 사서로서 인권을 기저로 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 모두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만드는 도서관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

42) 도서관법 제 8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43) 도서관법 제 28조(업무)

44)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

기면 좋은 인권 옹호자가 될 것이라는 IFLA의 선언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부 록

1983-Resolution on Behalf of Librarians Who Are Victims of Violation of Human Right
1989-Resolu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Censorship and Libraries
1994-Public Library Manifesto
1999-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
2002-Glasgow Declaration on Libraries, Information Services and Intellectual Freedom
2002-Internet Manifesto
2002-Statement on Librar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003-Resolution on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2004-Declaration from Buenos Aires on Information, Documentation and Libraries
2005-Beacons of the Information Society: The Alexandria Proclamation on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
2005-Alexandria Manifesto on Libraries, the Information Society in Action
2005-IFLA Position on Internet Governance
2008-Statement on Access to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n Historical Records

참고문헌

- ALA, “ALA Policy Manual, B.2.1 Library Bill of Rights,”
<<http://www.ala.org/aboutala/governance/policymanual/updatedpolicymanual/section2/53intellfreedom#B.2.1>> [2013.10.3.]
- Byrne, Alex “Libraries and Democracies,” Keynote Paper for Seminar on Libraries and Democracy, Stockholm, 4(1999. Nov.)
<<http://archive.ifla.org/faife/papers/others/byrne3.htm>> [cited 2013. 10.3]
- Eryaman, Mustafa Yunus, “The Public Library as a Space for Democratic Empowerment: Henry Giroux, Radical Democracy, and Border Pedagogy,” in *Critical theo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ploring the Social from across the Disciplines*, eds. G.J. Leckie, L.M. Given, and J.E. Buschman(Santa Barbara, Libraries Unlimited, c.2010), p.131-141.
- Harding, Olivering, “Literary Censorship and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 Role Of The Librarian,”
<[http://ezinearticles.com/?Literary-Censorship-And-Infringement-Of-Human-Rights-Role-Of-The Librarian...](http://ezinearticles.com/?Literary-Censorship-And-Infringement-Of-Human-Rights-Role-Of-The-Librarian...)>[Cited 2013. 9. 12]
-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Simplified Version of the UDHR,”
<http://www.hrea.org/index.php?doc_id=1> [2013.10.7.] 24)

- McCook, Kathleen de la Pena, & Katharine J. Phenix, "Public Libraries and Human Rights," *Public Library Quarterly*, Vol.25, No.1-2(2006), pp. 57-73.
- Phenix, Katharine J., and Kathleen de la Pena McCook, "A Commitment to Human Rights-Let's Honor the Qualities Required of a Librarian Dedicated to Human Rights," *Information for Social Change*, Vol. 25(2006)
<<http://www.libr.org/isc/issues/ISC25/articles/A%20COMMITMENT%20TO%20HUMAN%20RIGHTS.pdf>> [2010.10.7.]
- Samek, Toni(a), "Critical Librarianship: an interview with Toni Samek,"
<<http://bclaifc.wordpress.com/2007/11/13/critical-librarianship-an-interview-with-toni-samek/>> [Cited 2013. 10. 7]
- _____(b), *Librarianship and Human Rights: A twenty-first century guide* (Oxford: Chandos, c2007).
- _____(c), "Internet AND Intention: An Infrastructure for Progressive Libraria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Ethics*, Vol.2(2004).
<http://www.i-r-i-e.net/inhalt/002/ijie_002_23_samek.pdf> [2013.10.7]
- _____(d), "Ethical Reflection on 21st Century Information Work: An Address to Teachers and Librarians," *Progressive Librarian*, Vol. 25(2005), pp. 43-61.
- Thomas, David R., "A general inductive approach for qualitative data analysis."
<http://www.fmhs.auckland.ac.nz/soph/centres/hrmas/_docs/inductive2003.pdf>
[cited 2013. 9.20]
-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http://www.ohchr.org/en/issues/Pages/WhatareHumanRights.aspx>>
[cited 2013.10.3.]